

의안번호	2112502
의 퇴 인	고민정의원
회 답 일	2021. 09. 02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12502)

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-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(안 제31조제1항 후단 신설)
-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하여야 함

II. 비용추계 결과

- 추가재정소요 : 향후 5년 간 총 1,140억원, 연평균 228억원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부 집합교육 방식으로 연간 8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교육 방식 및 시간 등에 따라 추가소요액은 변동할 수 있음

[표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2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	합 계	연평균
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(안 제31조제1항)	236	232	228	224	220	1,140	228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2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3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	3
2.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(안 제31조제1항 후단 신설)	3
3. 추계 결과	5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236억원, 2026년 220억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,140억원(연평균 228억원)으로 추계으로 추계됨¹⁾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2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	합 계	연평균
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(안 제31조제1항)	236	232	228	224	220	1,140	228

II. 재정수반요인

-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(안 제31조제1항 후단 신설)
 -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하여야 함

1)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부 집합 교육 방식으로 연간 8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교육 방식 및 시간 등에 따라 추가 소요액은 변동할 수 있음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- 본 비용추계는 “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(집합교육)”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추계
 - 개정안은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하여 특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해당 교육을 전부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“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 소요액”에서 “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의 재정소요액”을 차감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“아동안전사고예방” 사업(2021년도 예산 6억 5,100만원)을 통하여 집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방식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교육을 실시하고 있음
 - － “아동안전사고예방”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은 2020년 한 해 동안 성폭력 및 아동학대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869회 실시하였음
-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“대상기관 수”에 “연간 교육시간” 및 “교육비 단가”를 적용하여 산출
 - (대상기관 수)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 수의 최근 5년간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기간 동안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 수를 추정
 - (연간 교육시간)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[별표 6]에서 “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”의 교육시간을 “연간 8시간 이상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연간 8시간으로 가정
 - (교육비 단가)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교육의 2021년 기준 강사비 단가인 1시간당 7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, “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액”에서 “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의 재정소요액”을 차감하여 추계
 -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“대상기관 수”에 “연간 교육시간” 및 “교육비 단가”를 적용하여 산출

<비용추계 산식>

$\text{연간 추가재정소요}_t = \text{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소요액}_t^{1)} - \text{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재정소요액}_t^{2)}$

이 때, t 는 추계연도(2022~2026년)

1)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소요액 $_t = \text{대상기관 수}_t^{a)} \times \text{연간 교육시간}^{b)} \times \text{교육비 단가}_t^{c)}$

a) 대상기관 수 $_t$ 는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 수의 최근 5년간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추정

b) 연간 교육시간은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[별표 6] 규정(연간 8시간 이상)에 따라 8시간 적용

c) 교육비 단가 $_t$ 는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교육의 2021년 기준 강사비 단가인 1시간당 7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
2)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재정소요액 $_t = \text{연간 교육시간}^{a)} \times \text{교육비 단가}_t$

a) 연간 교육시간은 현행 “아동안전사고예방” 사업을 통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교육의 교육시간: 2020년 기준 869시간(1회당 1시간) 적용

2.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(안 제31조제1항 후단 신설)

가.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

- (대상기관 수)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 수의 최근 5년간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기간 동안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 수를 추정

-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현황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
 - 2016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278개, 어린이집 41,084개, 유치원 8,987개에서 2020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274개, 어린이집 35,352개, 유치원 8,705개로 감소

[표 2]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 수(추정치): 2022~2026년

(단위: 개)

	2022	2023	2024	2025	2026
아동복지시설	272	271	270	269	268
어린이집	32,800	31,594	30,432	29,313	28,235
유치원	8,568	8,501	8,434	8,367	8,301
합 계	41,640	40,365	39,136	37,949	36,80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연간 교육시간) 대상기관 1개당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간 8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적용
 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[별표 6]은 “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”의 교육시간을 “연간 8시간 이상”으로 규정하고 있음
- (교육비 단가)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교육의 2021년 기준 강사비 단가인 1시간당 7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는 “대상기관 수”에 “연간 교육시간” 및 “교육비 단가”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[표 3]과 같음

[표 3]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: 2022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	합 계	연평균
아동학대 예방교육 비용	237	233	228	224	221	1,143	22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

- 현행 “아동안전사고예방” 사업을 통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교육의 연간

교육시간인 869시간(2020년 기준)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[표 4]와 같음

[표 4]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: 2022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	합 계	연평균
아동학대 예방교육 비용	0.62	0.63	0.63	0.64	0.65	3.17	0.6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(집합교육)에 소요되는 비용로, 2022년 236억원, 2026년 220억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,140억원(연평균 228억원)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“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액 ([표 3]에 해당)”에서 “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의 재정소요액([표 4]에 해당)”을 차감하여 추계

[표 5]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(집합교육)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2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	합 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236	232	228	224	220	1,140	22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국회예산정책처	사회비용추계과
과장	이진우
추계세제분석관	유희수
연락처	02-6788-4740
	hsyoo@nabo.go.kr
